## 붙임1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	개정사유
Ⅱ.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. 사업대상(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될 경우) ○ '14.12.31일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(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,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) <신규> ○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(만 50세 이하)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(만 50세 이하)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)	Ⅱ.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-1. 사업대상(FTA가급)(아래항목중하나에해당될경위) ○ '14.12.31일 이전에 「축산법」제22조에 따라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(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, 등록이유지되는 경우) ① '14.12.31일 이전 축산업 허가·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의 경우, 농업경영체 등록일로 확인 ② ③ ④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(만 50세 이하)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(만 50세 이하)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)<삭제>	□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한 사업 재원별* 대상자 구분  * FTA 기금, 이차보전 ○ 사업 대상의 나이제한(만 50세 이하) 삭제 및 「후계청년농어업인법」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우선운위 부여
- 《신규》	1-2. 사업대상(농특화계 이차보전(이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위) ○「축산법」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 ※ 축산업 허가·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의 경우, 농업경영체로 확인 ※ 축사 신축,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○「양봉산업법」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(농업법인 포함) ○ 『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 또는 ②고등학교* 및 대학**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	

현행	개정	개정사유
	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) * 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축산(학)과, 동물자원과 등 축산 관련학과 **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축산(학)과, 동물자원과학과, 축산경영학과, 축산개발과, 영양학과, 유가공학과 등 축산 관련학과 ** 경력·졸업 확인: 근무 농장의 경력확인서(건강·연금·고용·산재보험 납입확인서 등),	
2. 지원자격 및 요건 < 선정 우선순위 > ::  <신규>	2. 지원자격 및 요건 < 선정 우선순위 > <삭제>	<ul> <li>□ 선정 우선순위 삭제</li> <li>○ 기존 별도 구분이 없던 우선순위를 사업의 목적 달성 및 정부 정책방향 등에 맞추어 지원자격 및 지원요건 설정</li> </ul>

현행	개정	개정사유
<신규>	지원요건 >	□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 추가 ○ 기존 우선순위를 사업의 목적 달성 및 정부 정책방향 등에 맞추어 지자체에서 평가 및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 고려사항 및 가점 부여사항 반영

현행	개정	개정사유
	○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의 유우군	
	능력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낙농가	
	○ 과거 1년('24.1월~'24.12월)간 한우 거세우	
	출하 평균월령이 26개월 미만인 경우	
	○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비육용암소시장 육성	
	사업에 참여한 경우	
	* 비육용암소시장 육성사업 참여여부는 지자체에서 확인	
	○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한우·젖소 육종농가	
	○ 「한센병사업 관리지침」에 따른 한센인	
	정착마을 거주인	
	○ 이외 <sup>①</sup> 사업추진 가능성 및 <sup>②</sup> 정부정책 참여도	
	등을 시·도에서 자체 판단	
	□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서는 다음 각 기관으로부터	
	지정(또는 인증)받은 사업신청자를 종합적으로	
	판단하여 평가 시 가점 부여	
	○ (농림축산식품부) 방목생태 축산농장	
	○ (농산물품질관리원) 친환경 축산물, 무항생제 축산물	
	○ (축산물품질평가원) 저탄소 축산물	
	○ (축산환경관리원) 동물복지 축산농장, 깨끗한	
	축산농장, 환경친화축산농장	
	○ (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) 안전관리인증(HACCP)	
	□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서는 사업신청자 평가 시	
	다음의 경우를 자체적으로 감점 부여	
	○ 직전년도에 축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(1회) 시점면령 등 기다 체적합부의 바이	
	(1회),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	
	<u> </u>	

현행	개정	개정사유
<ul> <li>&lt; 지원 제외 &gt;         <ul> <li>∷</li> <li>○ '21.1.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, 벌금,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</li> <li>ः</li> <li>□ 지원 제한 기간</li> </ul> </li> </ul>	<ul> <li>&lt; 지원 제외 &gt;         <ul> <li>과거 3년간('22.1.1일 이후)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, 벌금, 과태료 등 처분이 확정되거나, 처분을 받은 농가 중 지원 제한 기간에 해당되는 농가</li> <li>지원 제한 기간</li> </ul> </li> </ul>	○ 처분 전(처분 확정) 농가에 대한 지원 제외 - (기존) 후순위 → (개정) 지원 제외
1) 징역(집행유예 포함), 벌금 : 3년 2) 과태료(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), 과징금, 영업정지(조업중지·사용정지) : 2년 3) 과태료(1회),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* : 1년 * 다만,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 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<신규>	1) 징역(집행유예 포함), 벌금: 3년 2) 과태료(동일 위반행위로 직전년도에 2회 이상받은 경우), 과징금, 영업정지(조업중지·사용정지): 2년 3) 과태료(1회),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*: 1년 * 다만,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사정조차를 왼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<삭제> ○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(닭·계란·오리·육우·양봉·사슴에 한함) * '24.1~12월 동안 납입 실적(닭·계란은 '22~'24년)	<ul> <li>○ 과태료(1회) 시정명령 등 처분농가 삭제</li> <li>○ 자조금 미납 농가 지원 제외</li> <li>- (기존) 후순위 → (개정) 지원 제외</li> </ul>
3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:: ○ 축사시설: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 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-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 시설, 급수시설, 전기시설, 착유시설, 환기 시설, 조명 시설, 발열 시설, 소방 시설 등	3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::  ○ 축사시설: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 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-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 시설, 급수시설, 전기시설, 착유시설, 환기 시설, 조명 시설, 발열 시설, 소방 시설 등	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조정 ○ 가금관련 시설 추가 ○ 가금농가 AI 예방을 위한 나무식재 지원 제외 ○ 위법 시설 및 기자재 지원 불가 명시

현 행	개정	개정사유
(양돈) 쿨링패드, 자동급이기 및 급이시스템 구축, 분만틀, 슬러리 시스템, 인공수정센터의 정액생산 시설, 제조실	(양돈) 쿨링패드 및 축사냉난방 장치, 자동급이기 및 급이시스템 구축, 분만틀, 축산법령에 적합한 스톨, 슬러리 시스템, 인공수정센터의 정액생산시설, 제조실	
<ul> <li>∷</li> <li>○ 축산시설: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</li> <li>(가금) 계란·종란 보관창고, 집란기, 계란 세척기·선별기, 부적합란 처리기기, 포장기, 왕겨자동살포기, 왕겨창고, (양돈) 자돈 인큐베이터, (양봉) 양봉산물 저장고·창고, 꿀 저장용기, 채밀기, 농축시설, 꿀 저장용기 운반용 트레일러·리프트, (말) 자동보행기, 말 수송 트레일러 등</li> </ul>	<ul> <li>∷</li> <li>○ 축산시설: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</li> <li>(가금) 계란·종란 보관창고, 집란기, 계란 세척기·선별기·건조기, 부적합란 처리기기, 포장기, 왕겨자동살포기, 왕겨창고, (양돈) 자돈 인큐베이터, (양봉)양봉산물 저장고·창고, 꿀 저장용기, 채밀기, 농축시설, 꿀 저장용기 운반용 트레일러·리프트, (말) 자동보행기, 말 수송 트레일러 등</li> </ul>	
<ul> <li>∷</li> <li>○ 방역・방제시설 : 울타리(또는 담장), 농장출입문, 차량 세척·소독 시설·장비, 대인소독시설·장비, 방역실, 축사전실,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, 출입통제시설(CCTV 등), 울타리, 해충구제램프, 말벌 퇴치장비(트랩 등), 새 그물망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</li> </ul>	<ul> <li>∷</li> <li>○ 방역・방제시설: 울타리(또는 담장), 농장출입문, 차량 세척·소독 시설·장비, 대인소독시설·장비, 방역실, 축사전실,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, 출입통제시설(CCTV 등), 울타리, 해충구제램프, 말벌 퇴치장비(트랩 등), 새 그물망, 알·분뇨 벨트덮개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</li> </ul>	
<u>;</u>		

현 행	개정	개정사유
4.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	4. 지원형태 및 방법	
< 지원 형태 >	< 지원 형태 >	□ 재원별 지원 형태 명시 및 의무 준수사항
<신규>	○ FTA기금 및 이차보전 : 융자 80%, 자부담 20%	문구 조정
	* 이자율 : (FTA기금) 연리 1% (이차보전) 연리 2%	○ 이차보전 사업대상자 확대에 따른 재원별
	* 상환기간 : 5년 거치 10년 상환	지원형태 조정
○ 중·소규모(FTA기금) 및 대규모(이차보전) : 융	○ 중·소규모(FTA가금) 및 대규모(이차보전) : 용	
자 80%, 자부담 20%	<del>자 80%, 자부담 20%</del>	
* 이자율 : 중·소규모 연리 1%(대규모 2%), 5년 거치 10	* 이자율 : 중·소규모 연리 1%(대규모 2%), 5년 거치 10	
년 상환	<del>년 상환</del>	
○ 이차보전이 남는 경우 중·소규모 농가에게 지원 가능	○ 이차보전이 남는 경우 중·소규모 농가에게 자원 가능	
* 중ㆍ소규모는 회계와 관계없이 해당 규모에 따른 기	* <del>중 * 소규모는 회계와 관계없이 해당 규모에 따른 기</del>	
준을 준수해야 함	<del>준을 준수해야</del> 함	
○ 융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	○ 융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	
○ (농가 분류 기준) '14.12.31일 기준 축산업 허가·등	○ (농가 분류 기준) <del>'14.12.31일 기준 축</del> 산업 허가·등	
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	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<del>-형태 판단</del>	
<신규>	- FTA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	
	'14.12.31일 기준 축산업 허가.등록증에 기재된	
	축사면적이 중·소규모 농가인 경우 지원	
:	!	
<신규>	○ 별도예산배정	
	- 산란계 케이지 사육기준 강화('25.9.1.)에 대비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축산시설 및 케이지 등을 수선·교체하고자 하는 산란계 농가는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검토하여 별도 예산배정	○ 별도로 예산을 배정하는 사항(산란계 케이지, 스마트 축산단지 등)에 대한 자금 지원 형태 추가

현행	개정	개정사유
	<ul> <li>광역 악취저감사업,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지자체가 지역단위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시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하여 별도 예산배정</li> <li>* 다만, 예산 배정 시 해당 지자체의 개별 농가에 대한 예산은 일정 부분 축소하고, 사업이 취소될 경우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</li> </ul>	
<ul> <li>&lt; 사업 의무 준수사항 &gt;</li> <li>○ 지원받는 해당 축사의 산란계 케이지는 「축산법」에 따라 축산업 허가·등록 기준을 준수하여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을 설치</li> <li>- (사육밀도) 0.05㎡/마리 → 0.075, (단수) 9단 이하, (케이지 사이 복도) 폭 1.2m 이상, 3~5단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등</li> <li>- 그외 축산업(축종)은 향후 「축산법」 개정 내용,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영할 계획</li> <li>○ 「축산법」에 따라 축산업 허가·등록 및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에 따라 방역·소독시설을 설치·구비</li> </ul>	<ul> <li>&lt; 사업 의무 준수사항 &gt;</li> <li>○ 지원받는 해당 축사의 산란계 케이지는 「축산법」에 따라 축산업 허가·등록 기준을 준수하여 동물복자형 축사시설을 설차</li> <li>- (사육밀도) 0.05㎡/마리 → 0.075, (단수) 9단 이하, (케이지 사이 복도) 폭 1.2m 이상, 3~5단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등</li> <li>- 그 외 축산업(축종)은 향후 「축산법」 개정 내용,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영할 계획&lt;삭제&gt;</li> <li>○ 「축산법」에 따라 축산업 허가·등록 요건 충족 및「기축전염병 예방법」에 따라 방역·소독시설을 설치·구비</li> </ul>	○ 산란계 사육 면적에 대한 「축산법」개정 시행으로 관련 내용 제외 및 요건 충족 의무 부여

현 행	개정	개정사유
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	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	
i		□ 재원별 지원 대상 면적 및 상한액 조정
<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>	<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>	○ 이차보전 사업대상자 확대에 따라 중·소규모
FTA기금(중·소규모) 이차보전(대규모)	FTA기금, 이차보전 이차보전	농가 지원내용 명시
┃	중·소규모 대규모	
분 전역당 면석(m², 지원 최대 면석(m², 지원 최대 기원 최대 기원 조대 기원	구 국시 분 면적당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이상수이 상한액 초과수이 상한액	
	<mark>  하)   하)  </mark>	
Ⅲ.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	Ⅲ.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	
4.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	4.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	
1	<b>:</b>	
< 대출취급기관(농협) >	< 대출취급기관(농협) >	
○ 대출 실행 시 시·도(시·군·구)가 통보한 사	○ 대출 실행 시 시·도(시·군·구)가 통보한 사	□ 자금교부 시 대출취급기관 역할 조정
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	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	○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대출 실행내역,
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, 사업 추진	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, 사업 추진	실집행률 등 관리를 위해 대출취급기관에서
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	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	사업 완료 시 지자체 통보
<신규>	○ 대출 실행 완료 사업자에 대해 지자체(시·도	14 B Fr 1 1 1 1 1 1 1 1 2 T
:	또는 시·군·구)에 통보 :	
:   С गेडेचोचोचोचो		
6. 사후관리단계	6. 사후관리단계	□ 사후관리기간 문구 조정
○ 사후관리기간 (기호기기 기기) 기억이크 호 오카메시기에	○ 사후관리기간 (시호코기 기기) 시어의 후 오기네시기에	○ 융자금 전액 상환 시까지 사후관리 기간 부여
- (사후관리 기간) 사업완료 후 융자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상환 시까지	- (사후관리 기간) 사업완료 후 융자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전액 상환 시까지	○ 과거 사업(융자 전환 전 보조사업 등) 시행
* 변경된 사후관리 기간은 '19년도 사업대상자부터 소	* 사후관리 기간은 해당 사업자금 당해년도의 사업	시에는 당해연도 지침에 명시된 기간동안
급 적용하며, 국고보조로 지원된 '18년 이전 사업대	지침을 적용	사후관리 추진
상자는 해당연도의 사후관리 기간을 적용		116716

현행	개정	개정사유
:: - (담보설정) 사업 완료 후, 사후관리 기간 내 담보설정하려는 농가는 시·도의 승인 후 조치	:: - (타용도 사용 <del>담보설정</del> ) 사업 완료 후, 사후 관리 기간 내 타용도(장기간임대, 담보설정 등) 사용 또는 미사용하는 농가의 경우 시· 도에 그 사유와 처분내역, 사용계획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(시·도 승인) <del>승인 후</del> <del>조치</del>	○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
* 다만, 국비 보조 없이 융자로만 사업 추진한 경우 시·도 승인 불필요('09년~')	* 다만, 국비 보조 없이 융자로만 사업 추진한 경우 사·도 승인 불필요('09년~')<삭제>	